

土木工程示方書

96

韓國輸出產業公團

24

104

토목공사시방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공사는 그시행 일체를 설계서,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의거 감독원 지시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조 본 시방서 설계서,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것은 감독원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조 모든 공사 시행순서, 방법, 기계, 기구 반입등에 대하여는 사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착수전 및 준공후에는 사진전경(全景)을 촬영하여 각각 5매씩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7

제 4 조 공사 착공전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각 구조물의 위치 표고(標高)등을 정확히 측량

하여 기준 표고점과 인상점(印象點)을 설정하고
 그 위치가 이동 없겠음 상시 보호하여야 한다
 단 본위치 표고등 설정에 있어서 기존 시설 즉
 건물, 급수, 전기등 시설에 접촉 관계를 면밀히 조
 사하여 저촉 여부를 확인한 연후 만일 해당 사실
 이 발생시에는 시공전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5조 감독원 사무소는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건
 평 10평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 6조 공사중 출역부 자재 수불부를 비치하고 일일
 작업 자재 수불 현황 및 출역 동태를 검탈 받아
 야 한다

제 7조 공사에 필요한 측량 표준틀, 가도(假道), 가
 수도, 조명, 보안, 기타 설비 및 각종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8조 여하한 구조물이라도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의 98

시공은 감독원 입회 승인가에 시공하여야 하며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3매씩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감독원이 공사 감독상 또는 준공 및 기성부분 검사시 공사 감독원 또는 검사원은 그 지정장소에 대하여 파패검사를 행할 수 있다.

제9조 공사 시공중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별도 승인 없이는 기존 시설의 저촉되는 시공을 하거나 파훼 침해를 금한다.

제10조 각공사 시공에 있어 각 기관에 관련이 유할시는 항상 밀접한 연락을 취하여 승인을 얻은 연후 착공하는 동시에 공사 수행상 과오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 준공후에는 모든 가시설물, 기타 잔재료를 철거 정리하고 공사구역을 청소 하여야 한다.

제 2 장 재 료

제12조. 공사용 자재일체는 그 품질, 수량, 규격등

소정의 필수조건을 구비함은 물론 현장에 반입할 시는 일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필한 연후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신품으로 교환하여 전기에 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설계서 도면에 기재된 재료치수는 별도 명시 되어 있지 않은한 다름 치수이다.

제 14 조 목재는 직재(直材)이며 갈리지거나 썩은 것 벌레집 등이 없고 건조한 것이어야 하며 단 기초 말뚝 토대목등 수중에 사용할 것은 생목이 여야 한다.

제 15 조 석재는 화강암이 여야 하며 그 질이 견경 치밀하고 풍화되지 않은 것 이여야 하며 특히 축대의 주석(基石)은 소정 규격을 보유하고 형체 무결한 우량품이여야 한다.

제 16 조 세멘트는 1대 정미 42.638 Kg 드리 포
장품 정대를 사용하고 파대, 습기등으로 변질품은
일체 사용치 못한다.

제 17 조 모래는 청정(淸淨)한것으로 한강산을 사용
하여야 하며 해감은 충분 세조된것이라야 한다

제 18 조 자갈은 한강산을 사용하여야하며 모래, 해감
및 흙이 묻지않고 형태가 가늘게 길고 편평(偏平)
한것은 사용치 못한다.

제 19 조 철재는 그 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부식등
결점이 없어야 하고 주물(鑄物)은 그 질의 치밀
하고 기포집등이 없어야 한다.

제 3 장 도 공

제 20 조 흙파기는 설제도의 종단 및 횡단면도에 준
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빗탈면 경사도는 특히 지정
하지 않은 이외는 흙 1할 경암 5부 연암 7부를 표
준으로하고凹凸없이 평탄하게 하고 흙부분에는 평

-6-

떼 (張芝) 를 매식하여야 한다

제 21 조 흙 쌓기는 흙쌓기 높이 60 cm 마다 충분
전압하고 비탈은 흙쌓기 높이 10 m / 할 5부 10
m 이상은 2할이여야 하며 단 침수구역내에 있어서
는 지시에 따라 2할이상의 경사라야한다. 또 비탈에
는 떼의 생장에 적당한 진토를 사용하여 벽가래등
으로 견고히 다진다음 20 cm 간격으로 줄떼 (筋芝)
를 매식하여야 한다.

제 22 조 흙쌓기를 할 지반에 존재한 유해한 잡물
나무뿌리 등은 제거하고 습지 또는 용수 (湧水) 되
는 장소에는 상당한 배수공을 시설한 후 착수하고
구조물에 접한 장소는 흙쌓기 60 cm 이내를 1 층
으로 다지며 순차 돋우어야 한다

제 23 조 흙 쌓기에는 초목, 기타 잡물 혼입을
금하며 하기 표준에 의거 더 돕기를 한다

단 더 뜯기의 토적은 계약 수량에 가산치 않는다

흙쌓기 높이 3m 미만 더뜯기 높이 $\frac{1}{10}$

" 3m 이상 6m 미만 " $\frac{1}{10} \sim \frac{1}{20}$

" 10m 이상 " $\frac{1}{20}$

단 상기 비율은 토질의 경면 및 전후 고의 부동
에 의하여 증감한다

제 4 장 돌 쌓기

제 24 조 돌 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경사도로 풀쌓기

(谷積) 식으로 쌓고 접속은 호층(互層) 쌓기로 하

며 아이바는 최소한 6cm 이상 중첩하여야 한다

키쌓기는 비탈면에 수직으로 할 것이고 특히 사목

(四目), 팔권(八卷), 미모메지(미모目地) 등은 절

대 피할 것이며 뒷채임, 조약돌 지붕의 불균등으로

편압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밑돌(根石) 및

머리돌(天端石)은 반듯이 5각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25 조 찰쌓기(練績)는 적재의 오물을 완전히 세
조하고 콩크리트를 빈틈 없이 진충할 것이며 매
2 m² 마다 구경 45 mm 이상의 대가치(竹材)를
사용하여 물빠기(水拔)를 설치하고 연장 30 m 마
다 늘음줄눈(綠切)을 설치 하여야 한다.

제 26 조 줄눈은 1:3 몰탈을 사용할 것이며 몰탈
부착후 비로 깨끗이 쓸고 잣대를 대고 줄눈을 그
려야 하고 마루(天端) 콩크리트는 1:3:6 콩
크리트이며 목 45 cm 로 수평으로 고루워야 한
다.

제 5 장 터파기 및 기초공

제 27 조 본장은 모든 은거(暗渠), 돌 쌓기, 하수도
관등의 터 파기 및 기초에 적용한다.

제 28 조 기초지반은 경고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임의 시공을 엄금하며 감독원의 검사를 필한후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하고 그 구조물의 밑바닥 형태 및 토질에 따라 상당한 여유를 보지 하여야 한다. 단 암반경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단형으로 팔수도 있다.

제 29 조 콩크리트 기초공은 터파기내에 해감 및 물을 배제하고 필요에 따라 조약돌 또는 자갈을 부설한 후 소요형상의 거푸집을 정치시키고 소정의 콩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4일 이상이 경과된 후에 상부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제 30 조 토대목기초는 생솔(生松) 통나무를 사용할 것이며 이은곳은 30cm 이상 반결(半欠)로 접속시키고 못을 박어야 한다. 잔목(椶木) 사용의 경우에는 잔목을 소정간격으로 배치하고 토대목을 타입(打込) 블트로 박고 토대목 상단까지 조약돌 또는 자갈을

부설하고 견고히 다져야 한다

제 31 조 조약돌 기초공은 소요면적에 밀집하게 세워
쌓기로 채우고 땀자갈을 깔아야 하며 20cm 층으로
메를 사용하여 다진다.

제 6 장 콘크리트

제 32 조 세멘트는 중량으로 배합한다.

제 33 조 클탈 및 콘크리트용수는 세멘트 경화의 방해
가 되는 불순물이 없는 청정한 담수라야 한다.

제 34 조 잔골재 굵은 골재 세멘트는 점량할수 있는
일정한 세량검응 소운반 용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용기는 사전감독원의 검사를 필한것이라야 한다

제 35 조 클탈, 콘크리트시공에 있어 배합율의 정확을
기함은 물론 혼합은 마른 비빔, 물비빔 각 4회 이
상 반복하여 충분히 혼합되었다고 인정된 후 구조
물체에 투입하고 빈틈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
다.

제 36 조 막사는 재료 투입후 2분간 이상 회전하여야 한다.

단 1분간 회전수는 15회 이상이어야 한다.

제 37 조 콘크리트는 「스럼프」 측정기를 비치하고 콘크리트 연경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스투프 측정방법은 상경 10cm 하경 20cm, 높이 30cm의 증공절두(中空截頭) 원주형을 평면판상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층으로 채운후 형을 빼면 콘크리트 상부의 흐름을 cm 단위로 측정한다. 스투프는 철근콘크리트 15cm 보통콘크리트 8cm 로 하여야 한다.

제 38 조 콘크리트용 거푸집 널판은 두께 1.8cm 이상의 송판을 사용하고 내면은 대패로 미리 콘크리트면이 미려하게 하여야 한다.

제 39 조 각종 거푸집은 열격(裂隙) 또는 접촉 빈틈에서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견고 치밀하게 제작 조립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부착 방지를 위하

여 광유 또는 미누물질을 하여야 한다

제 40 조 모든 거푸집은 조립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후라야 콘크리트를 투입한다

제 41 조 콘크리트구조체 및 세멘트를 주자재로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후 콘크리트가 완전 경고될때 까지 풍가마니 거적등으로 덮고 살수하며 항상 습윤을 보지하여야 하며 동계 시공에 있어서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고제(急固劑)를 사용하고 상당한 방한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 42 조 콘크리트 및 몰탈은 혼합후 30 분이 경과한 것은 일체 사용치 못함은 물론 차에 세멘트를 혼합하여 재사용을 금한다

제 43 조 콘크리트공사는 섭씨 영하 4도로 강하할 우려가 있을때는 시공을 중지한다

제 44 조 철근은 사용전 녹(浮鏽) 또는 해금 기름이 부착 양계끔 저장하여야 하며 녹, 해금, 기름등이

부착된것은 완전 제거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45조 철근은 가급적 연결치 않은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나 부득이 연결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대 장력을 받은 개소를 피하여야 하며 중첩부분은 직 경의 40배이상 보지하여야 하고 20번 철사로 묶어야 한다

제46조 관거부설(管渠布設)에 있어서 기초공없는 개소에 대하여는 특히 기초지반을 다져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적당히 조약들을 채워야 한다

제47조 콘크리트관은 펄리 널판키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제48조 콘크리트관 제작용 콘크리트는 연연(軟練)으로 하고 그 함수량은 다져서 상면에 침출할 정도라야 하며 거푸집 제거는 휴무관에 준하여 최대 강도가 나올때까지 거치 하여야한다

제 7 장 배수공

제49조 배수공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그 부설에 있어서는 필히 감독원 지휘하에 경사도 및 계획고등을 측량한 연후 부설하여야 한다.

제50조 본 배수관 형틀은 철제 형틀로 하고 콘크리트는 믹사 비빔으로 하여야 한다.

제51조 배수관 매설심도는 (피복두께) 1m 이상이어야 한다.

제52조 맨홀과 배수관과의 연결부분은 맨홀구체 콘크리트시공전에 배수토관을 미리 맨홀구체 거무집에 삽입 거치한후 콘크리트를 투입하여 맨홀구체와 배수관의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 8 장 도로 구조물공

제53조 도로 로면은 표준 단면에 준하여 정지하되 도면 경사도는 별도 명시없는한 $\frac{1}{25} \sim \frac{1}{50}$ 로 하여

포들선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 54조 도로상에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은 도로 시
공기면에 맞추워 시공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 타

제 55조 설계서 시방서에 누락 혹은 명시되지 않
아거나 또는 본 시방서 및 시공상 의의가 있을 경
우에는 일체 감독원의 해석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56조 본 공사중은 상시 가수로를 만들어 도사
유출방지에 전력을 다할것은 물론 불가항력인 경우
라 할지라도 인접 민가 또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
을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도급업자
부담으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57조 본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경암은 본 공사
용으로 전용 활용하여야 한다 이때 가격조정은 갑
을 합의하에 재조정한다

單 員 名 會

任職名	姓	名	關係會社名	任職名	姓	名	關係會社名
理事長	李	丙虎		監事	金	龍成	新豐製粉株式會社
常務理事	延	日守		顧問	李	洋球	東洋川則工業株式會社
理事	李	源万	韓國川則製株式會社		李	漢垣	大韓製粉株式會社
"	金	南仁			朴	興植	和信產業株式會社
"	李	庭林	大韓洋反工業株式會社		薛	卿東	大韓產業株式會社
"	鄭	載高	三韓貿易株式會社		全	澤大	株式會社 天友社
"	崔	恭涉	韓國分司工業株式會社		宋	活	大韓證券株式會社
"	洪	在善	金星紡織株式會社		李	完	韓國貿易協會
"	黃	相根	天洋產業株式會社		金	容虎	京城紡織株式會社
"	申	永迹	韓國鐵鋼株式會社		徐	甲顛	阪本紡績株式會社
"	禹	昌亨	三豐製紙株式會社		許	弼錫	在日韓國人商工會連合會
"	朴	應結	高麗石綿工業株式會社	會員	求	珠河	大阪商工振興會
"	沈	相俊	濟東產業株式會社		黃	清男	南星產業株式會社
"	趙	洪濟	暎星物產株式會社		翰	快仁	世紀商事株式會社
"	李	道榮	一信產業株式會社		金	永植	韓國川則工業株式會社
監事	朴	龍學	大韓農產株式會社				國都建設株式會社

112

23